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 학 용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24-22
--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0.

발 의 자 : 박학용, 김현진, 김지수,  
고찬양, 전철규, 신찬호,  
김성한

## 1. 제안이유

이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. 또한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나.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다.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개인, 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안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협조부서 : 문화체육과

다. 입법예고 : 2024. 2. 23. ~ 3. 4.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)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·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
2.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
3.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
4.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
5.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
6.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이스포츠시설 설치·운영)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,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
2.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
3. 구민 및 각 계층별,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
4.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
5.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

제6조(표창)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붙임****관계법령 발췌서**

□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